

## 5장 자격증 교부 신청

### 1 신청절차



###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05043)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26(성지하이츠 2층)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자격)교부 담당자 앞

나. 유의사항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등기번호를 기억해둘 것을 권장함
- 하루에 수천 여 통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개인별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이 불가함

다. 접수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

### 3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응시자격	필수 제출 서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언어재활기관에 3년·1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③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④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국시원 서식) ⑤ 2급 재직자(본인) 재직증명서류(원천징수영수증) ⑥ 상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⑦ 상급 언어재활사 상급증명서류(4대보험가입(직장)내역) ⑧ 상급 언어재활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⑨ 언어재활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⑩ 의사진단서 ※ 본인이 상급 언어재활사인 경우 ⑥~⑧ 생략 가능

응시자격	필수 제출 서류
2012년 8월 5일 이후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입학하여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 및 학위 취득 (단, 2015년 8월 5일 이후 입학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③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 ④ 성적증명서 ⑤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 ⑥ 의사진단서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이후 학위 취득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③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재학시기 증명서류 ④ 의사진단서
2012년 8월 5일 당시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위 취득	① 자격증교부 신청서 ②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③ 의사진단서

#### 1. 자격증 교부 신청서(공통)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 2. 졸업증명서(공통)

- 대학별 단체 신청의 경우에도 개인별 제출 서류를 각각 첨부
- 대학에서 보낸 공문으로는 대체 불가함
- 졸업예정증명서는 불인정(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자격증 신청 가능)

#### 3. 언어재활사 업무 경력증명서(1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4. 2급 재직자(본인) 재직증명서류(1급 언어재활사 해당)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미가입시 '급여명세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5. 상근 언어재활사 상근증명서류(1급 언어재활사 해당)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개 중 2개 이상 가입)

6. 상근 언어재활사 개인정보 수집동의서(1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7.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2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8. 성적증명서(2급 언어재활사 해당)

- 언어재활관련 교과목이수증명서에 기재한 과목명을 반드시 **형광펜**으로 표시

9.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2급 언어재활사 해당)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에서 다운받아 작성

10. 언어재활 관련 학과 재학시기 증명서류(2급 언어재활사 해당)

- 주전공자 : 입학일자 확인 가능(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 복수전공자 : 복수전공 승인일자 확인 가능

11. 의사진단서(공통)

- 의사진단서는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이 면허교부신청서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12.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해당자에 한함)

- 관련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사진교체 : 요구서(사진 1매 부착), 신분증 사본을 방문·우편 제출
- 이름변경 : 개명 시, 요구서와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을 방문·우편 제출

13. 외국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 제출서류를 별도로 제출  
(※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필수(아포스티유 비협약국가는 영사확인 필수))
- 영문일 경우 번역·공증받지 않고 원본으로 제출 가능하나, 한국어 또는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기재된 서류는 번역·공증 후 제출하여야 함

국가	발급처	관련서류명	내용
미국	주한미국대사관	AFFIDAVIT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사실 유무 범죄기록 사실유무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뉴질랜드	주한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성명서	
중국	해당시 공증처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	일본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시청	신분증명서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사실 유무

※ 위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

14. 기타 제출 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발급 신청안내]-[직종별 신청서류] 참고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끝